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72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김정호 · 이수진 · 전은수
임미애 · 정성호 · 박 정
서왕진 · 김남준 · 김남희
이연희 · 안태준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해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임금 산정기준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최

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 시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보험기금 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금 산정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현상을 해소하고,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실업급여,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실업급여의 보험료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는”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50조제1항 중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로 하

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에 이르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주마다 1일을 제외하고 산입한 일수가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계산하되, 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본문 중 “지급한다”를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며, 제5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으로 보고,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77조의5제2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제50조”를 “제50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7조”로 본다”를 ““제47조”로, 제50조제1항 중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

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제5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으로,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

제77조의10제2항 전단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제50조”를 “제50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7조”로 본다”를 ““제47조”로, 제50조제1항 중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제5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으로,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2. 실업급여 계정
3.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4.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정

제8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당해연도 지출액의 0.5배 이상 1배 미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에 따른 자금이관에 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에 따라 안정적인 계정 운영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첫 해에 한정하여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 수입 중 일부를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 금액은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75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직급여 지급 및 소정급여일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및 상병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u>실업급여</u> , <u>육아휴직 급여</u> 및 <u>출산전후휴가 급여</u> 등을 실시한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 ----- ----- ----- -- <u>실업급여</u> , <u>일·가정양립 지원 사업</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험료) ① (생략)	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u>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u> 및 <u>실업급여의 보험료</u> 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u>실업급여의 보험료</u> 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u>육아휴직 급여의 지급</u> ,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u> ,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u>출산전후휴가 급여</u> 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	② ----- ----- <u>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u> , <u>실업급여의 보험료</u> 및 <u>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u> ----- ----- <u>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u> 는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u>출산전후휴가 급여</u>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u>실업급여의 보험료</u> 는----- ----- -----

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후단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

-----.

다만,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에 이르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주마다 1

② ~ ⑤ (생략)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
 다.

② (생략)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
 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
 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
 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
 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일을 제외하고 산입한 일수가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계산하되, 소정급여일수
에 이르기까지 남은 일수가 1
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

 -----제44조제1
 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② (생략)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69조의9(준용) ① -----

--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
는 제외한다)-----

-----보며, 제56
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
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
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
分)”으로 보고,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본
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제77조의5(준용) ① (생략)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제77조의5(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0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

-----“제

47조”로, 제50조제1항 중 “피보

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는 “대

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

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③·④ (생략)
제77조의10(준용) ① (생략)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제5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으로,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0(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4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 제50조(같은 조 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제47조”로, 제50조제1항 중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제5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은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으로, 제63조제3항 중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

③·④ (생략)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

<u>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 여 관리한다.</u>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u><신 설></u>	<u>업 계정</u> 2. <u>실업급여 계정</u> 3. <u>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 정</u> 4. <u>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사업 계정</u> 5. <u>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정</u>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 정의 연말 적립금: 당해연도 지출액의 0.5배 이상 1배 미 만</u>
---	---